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19가단1180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2. 16.

판결 선고2021. 1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/6 소유권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7. 2. 27.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. 3. 22. 접수 제1817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갑 제1, 2호증,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별지 '청구원인'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. 위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/6 소유권지분을 증여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/6 소유권지분에 관하여,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영범

별지